

2025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민간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4.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상반기 보급대수 : 4,513대(승용차 4,000대, 화물차 500대, 승합 13대)

① 전기승용차 : 일반 3,400대, 우선순위 600대

② 전기화물차 : 일반 250대, 택배 150대, 중소기업 생산 50대, 우선순위 50대

③ 전기승합차 : 어린이통학버스 10대, 순환·통근버스 3대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전기택시·전기이륜은 별도 공고

※ 연간 총 5,713대(승용차 5,000대, 화물차 700대, 승합 13대)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등

○ 보급기간: '25. 2. 3.(월) 10:00 ~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신청

주의 1.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순 보조금 지급

주의 2.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특별시 의견을 따름

○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①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단,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외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여 지원 가능.
- ②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③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④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 ※ 승용차 보조금의 경우 BMS 이상장후 알림 추가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하였으며, 기능 이용에 마동의시 추가보조금 제외

2. 지원자격 및 대상

○ 공통자격

- (공통자격)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 ※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보조금 미지원 대상〉

- 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②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 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승용·승합·화물) 2년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 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가능

※ 초소형 승용, 초소형 화물, 법인 승합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제한없음

(단, 승합은 구매자와 제조수입사 간의 특수관계인일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2년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지원대상별 기준

< 승용, 화물 >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 대표자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일 경우 구매 가능
- (법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 렌탈·리스 용도로 차량 구매, 등록 시
 - ▶ (1년 이상 장기렌탈·리스) 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
 - ▶ (단기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가 30일 연속 서울특별시인 경우 신청 가능
 - ▶ (이용자명의 리스)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 (단, 계약서 등을 통해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 ※ 단기렌탈·리스로 신청 후 2년내 타 지자체 거주민에게 장기 렌탈할 경우 보조금 환수
- (외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¹⁾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어린이통학 차량>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 가능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통학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통근·순환 버스>

-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 ※ K-EV100 참여와 상관없이 제작·수입사(판매사 포함)가 자사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와 리스·렌트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1)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요건

-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 ③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서)
- ④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전기승용	중·대형	최대 630	580	50
	소형	최대 575	530	45
	초소형	225	200	25
전기화물	소형	최대 1,350	1,050	300
	소형(특수)	최대 1,990	1,550	440
	경형	최대 1,010	770	240
	초소형	530	380	150
전기승합	중형	최대 10,000	5,000	5,000
	대형	최대 14,000	7,000	7,000
전기승합 (어린이통학)	중형	최대 13,000	10,000	3,000
	대형	최대 15,000	11,500	3,500

- ※ 승용차(중·대형, 소형), 화물차(소형, 경형), 승합(대형, 중형) : 지방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 승용차는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5.3천만원 미만 100%, 5.3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50%, 8.5천만원 이상 미지원), 시비는 국비에 비례하여 지원
- ※ 승합(대형) : 최소 자부담금 1억이상이며, 전체 보조금은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 순환버스용 이층·굴절버스의 서울시 보조금은 최대 한도내에서 지원
 - ▶ 구매자가 이자 지원, 충전기 설치 등 별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또는 물품의 가액)만큼은 자부담금 산정시 제외
- ※ 차종별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 참조

○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구 분		추가지원
전기승용	공 통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중·대형, 소형	다자녀가구인 개인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국비 100만원, 3명인 경우 20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300만원 추가 지원 ※ 부모 중 한 명이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추가보조금 지원(자녀는 불가)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 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제조수입사가 BMS 이상 상태 알림 기능을 4년 이상 무상제공하 고 사용자가 알림 기능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시비 보조금의 20% 추가 지원(단, 주차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배터리 이상을 감지 시)
	초 소 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소 형, 경 형, 초 소 형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농업인*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자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 신규 택배차량은 전기화물차 출고하고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 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시 20만원만 추가 지원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없음(보조금 지급신청 전까지 명의변경, 수출말소시 미보유자로 인정) [예시]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이행 추가금) × 추가 보조요율 또는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이행 추가금) + 추가 보조금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가격 할인(50만원)하면 해당차량에 대해 시비 지원액의 50만원 추가 지원(택배차량은 50만원 추가 지원)
전기화물	초 소 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일시 : '25. 02. 03.(월). 10:00 ~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재지원 제한기간 : 승용 · 승합 · 화물 2년

○ 구매가능 대수

① 승용: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 지원)

※ 법인의 경우 초소형 승용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및 구매대수 제한 없음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1대는 서울시에 신청, 그 이후 신청 시 국비만 받고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가능

② 화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지원)

※ 기존 노후 경유(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단,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23.2.13.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법인의 경우 초소형 화물차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없으나 구매대수는 50대로 제한

※ 전기화물차(초소형) 5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별지 제4호서식)

단, K-EV100 참여업체 및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제외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1대는 서울시에 신청, 그 이후 신청 시 국비만 받고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가능

③ 승합

- 어린이통학버스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대

- 순환·통근버스 : 법인 1대(개인, 개인사업자는 미지원)

※ 법인은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단, 구매자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상법」상 특수관계(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2년)' 적용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비영리단체, 사단·재단 등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렌탈리스 렌탈리스 계약서 및 렌탈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추가 서류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기존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자동차등록말소 사항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갑)
- (BMS 알림기능 탑재 추가보조금) 배터리관리시스템 알림 정보제공 동의서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경유화물차 대체 구매)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 또는 말소 사실 증명서(폐차)
-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만 19세~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초소형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자(별지 제4호 서식)
- (택배화물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운송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6개월후)
- (어린이통학 버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자부담 확인서(승합-대형), 하자보증보험증권
- (통근·순환 버스) 통근버스 사용 약약서, 자부담 확인서(승합-대형), 하자보증보험증권
- (시민 대상 제작수입사 차량 할인제 참여)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할인 구매 확인서
* 차량 구매계약서에 할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차량출고·등록순(*승합: 접수순)

- 지원신청한 건 중에서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본사에서 10일 이내에 차량출고 가능하다고 제출한 명단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자격부여
 - ※ 각 본사에서 greencar@seoul.go.kr로 명단 제출한 건에 대하여 익일 자격부여 예정
 -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2개월내 미출고시 보조금 신청 취소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격부여를 받은 차량에 한하여 출고예정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에 요청
 - 서울특별시에서는 제작·수입사의 출고(예정)일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출고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불가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특별시로 한정(단, 1년 이상 장기 렌탈·리스업체 제외)
- ※ 차량출고 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수입사에 문의**

6. 보조금 지급(모든 서류는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

-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 전기승합은 최소 자부담금 확인서(대형), 하자보증보험증권 등 추가서류 필요하며, 어린이통학버스는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를 제출하여야 함
- ☞ 서울특별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7. 신청시 유의사항

-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 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단, 전기 승합의 경우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
-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특별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개인 선호 변경, 제조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안됨

- ④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 대표신청자와 자동차 등록시 대표소유자가 동일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 대표자 1인과 공동명의자가 모두 서울시 내에 거주하는 가족일 경우만 공동명의로 지원가능

- ⑤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이하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이 자동차 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도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 ⑥ '25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⑦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 ⑧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 부담*(이하 “최소 자부담금”)해야 하며,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장보조금 등, 이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구매자가 이자 지원, 충전기 설치 등 별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또는 물품의 가액)만큼은 자부담금 산정 시 제외

※ (예시) 구매자가 1억원 대출을 받아 구매비용을 충당하는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에서 제작사가 구매자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대출이자 2천만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경우, 구매자의 자부담액은 이를 제외한 8천만원이 되므로 상기 규정을 위반

- ⑨ 대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
- ⑩ 대형 전기승합차 제작·수입사가 차량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대출 등 자금지원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경부는 해당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안내 >

- 구매보조금 진행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및 보조금 지원 시스템 상 정보(구매자 정보, 보조금액, 첨부파일 등) 보완 필요시 서울특별시에서 차량 제작·수입사로 보완요청
- ※ 차량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차 7일, 2차 7일)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이내에 보완 못할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 가능
(미보완으로 인한 신청 취소는 서울특별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8.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 의무이행기간(8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준수 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특별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전기자동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 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 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명의이전 없이 타 지자체로 이사시(전출)에는 보조금 미환수(사전승인 불필요)

-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 이상 회수함

※ 서울특별시 내 판매 : 지급된 보조금(국비+시비)의 30%

※ 타지자체 판매 : 국비의 30% + 시비[운행기간별 회수요율 (표1) 적용]

※ 2024년 7월 26일 이전 보조금 신청한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 이상 회수함

- 의무운행기간(8년) 내 등록 말소(폐차의 경우 2년, 수출의 경우 8년)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말소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차액 회수액은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표2.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9.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 제조·수입사 지점, 대리점(카마스터, 직원 포함)의 전기차 업무처리(단순문의 포함) 등 관련 모든 문의는 해당 제조·수입사 본사에 문의
 - ※ 제조·수입사 본사에서 모든 대리점 지점에 대해서 민원 문의 처리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의 의견을 따름
- 보급 사업 도중 차종 추가 등의 사유로 차종별 지급되는 추가보조금(지역할인제, BMS 알림기능) 신청 가능하며 친환경차량과 검토 후 반영
 - ※ 지역할인제 : 전기화물 제작수입사가 차량가격 할인(50만원)하면 해당차량에 대해 시비 지원액의 50만원 추가 지원(택배차량은 50만원 추가로 지원)
 - ※ BMS 알림기능 : 제조수입사가 BMS 이상 상태 알림 기능을 4년 이상 무상제공하고 사용자가 알림 기능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시비 보조금의 20% 추가 지원(단, 주차 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배터리 이상을 감지(상시 또는 간헐)시 지급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명	주요 역할	연락처/홈페이지
환경부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	044-201-6888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한국환경공단	○ 법인(전기승용 및 전기화물) 2대 이상 구매 시	032-590-9907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충전기 설치, 충전기 고장신고 ○ 회원카드 발급	1661-9408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 (전기차 보급부서)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120 다산콜

< 제작사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처 >

제작사(승용)	연 락 처	제작사(화물)	연 락 처
현 대 자 동 차	080-600-6000	현 대 자 동 차	080-600-6000
기 아 자 동 차	080-200-2000	기 아 자 동 차	080-200-2000
B M W	080-700-8000	디 피 코	033-340-4800
한 국 G M	080-3000-5000	마 스 타 전 기 차	02-590-7281
스텔란티스 코리아	080-365-1200	(주) G S 글 로 벌	02-2005-5191
테 슬 라	080-617-1388	대 창 모 터 스	043-535-6336
벤 츠 코 리 아	080-001-1886	모 빌 리 티 네 트 워크 스	1522-7480
K G 모 빌 리 티	080-500-5582	에 스 에 스 라 이 트	1644-7752
폴스타오토모티브	080-360-0100	이 브 이 케 이 엠 씨	02-553-9866
볼 보	1588-1777	이 엔 플 러 스	031-366-9600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1577-6905	제 인 모 터 스	053-630-2800
스 마 트 솔 루 션 즈	031-237-3425	파 워 프 라 자	02-855-4955
대 창 모 터 스	043-535-6336	한 국 쓰 리 축	061-390-8700
마 이 브	1544-0703	일 진 정 공	031-376-9012
세 보 모 빌 리 티	1522-9282	(주) 오 텍	041-339-3300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30-8255		
제작사(중형 승합)	연 락 처		
현 대 자 동 차	080-600-6000		
이 비 온	1588-6389		
(주) G S 글 로 벌	02-2005-5191		
한 차	070-4266-1861		
테 라 팩 토 리	1533-8233		
중 원 자 동 차	031-765-2881		

붙임 1.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절차

[별지 서식]

제1호 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2호 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3호 초소형 전기자동차(승용,화물) 지역거점사업참여 확인(신청)서

제4호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제5호 전기(이륜포함)·수소 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준수 동의서

제6호 전기화물차 운행거리 증빙자료

제7호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제8호 2025년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할인 구매 확인서

제9호 2025년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 탑재 협약서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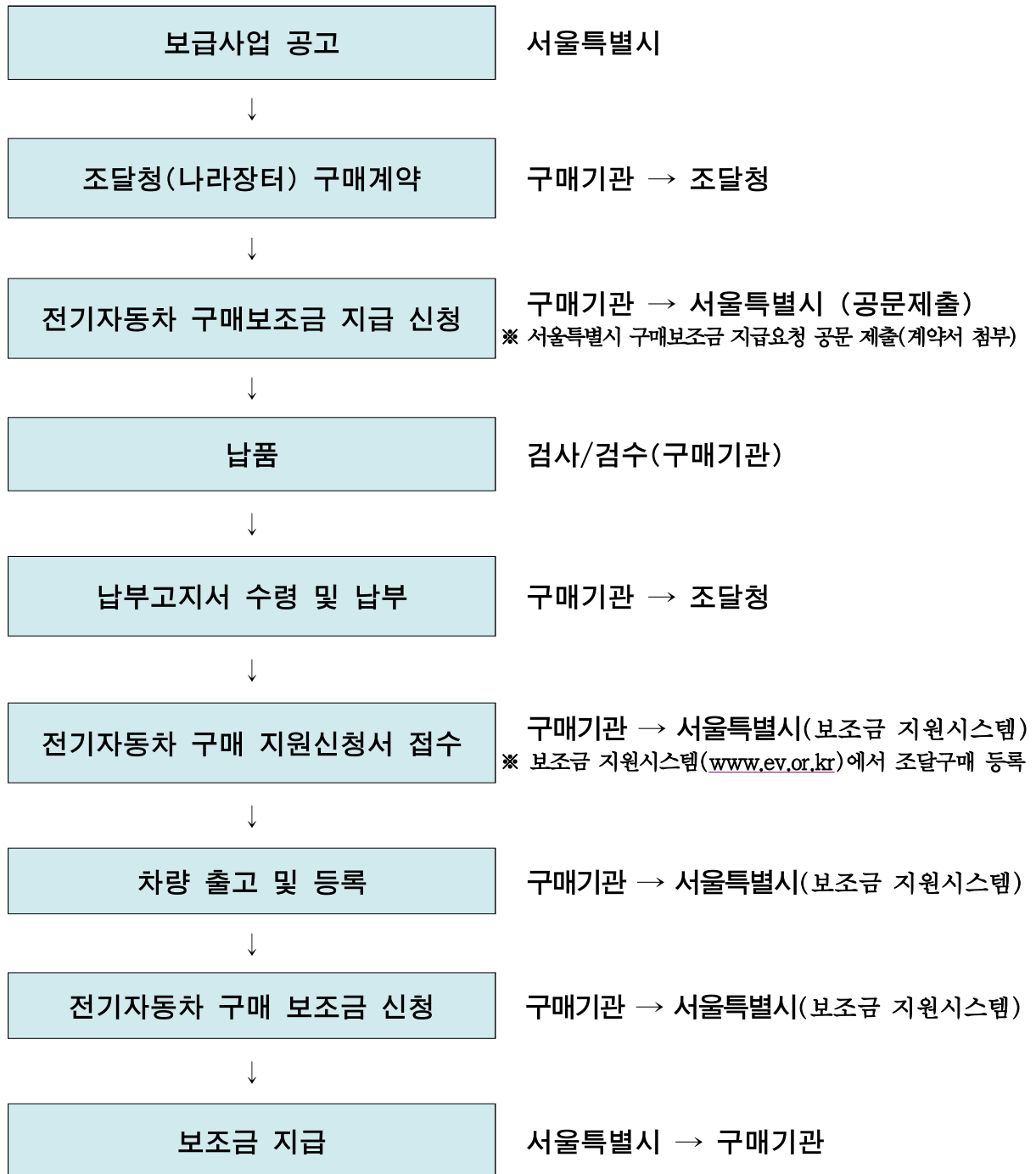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절차

□ 민간부문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 상기 절차를 미준수할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하고, 절차를 미준수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 가능
- ※ 전기승합은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 및 지급 신청

□ 공공부문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함께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소 (등록주소지)				(화물택사)제조수입사 서울시 할인제 참여 할인금액	만원
연락처	(전화)	(이메일)		배터리 이상 알림 동의여부	(O , X)

2025년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 우선순위대상 증빙서류(대상자에 한함), **할인 구매 확인서(대상차량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울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등록을 말소(반쯤)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닌 경우(장기렌탈리스 제외)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2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득해야 함
 - ※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은 매수자에게 인계
-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지켜야 할 운행기간(2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회수요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함
 - ※ 전기화물차의 경우 2년 이내 2만km 미운행 차량 판매시 지급된 보조금의 30%이상 환수
- 의무운행기간(8년) 내 등록말소(폐차 2년, 수출 8년)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차량 변경이 가능함
-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서울특별시'로 하여야 하며(단, 2대 이상을 구입하는 장기리스는 사용본거지 서울특별시 제한 제외), 구매자와의 관계가 서울시 거주 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함(어린이통학 버스는 예외)
- 동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재지원제한기간(승용 2년, 승합2년, 화물 2년, 소급적용)이내 동일한 차종의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함(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차, 초소형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수급이 중단되거나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의 탈락이 있을 수 있으니 주소지 구청, 동 주민센터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는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서울특별시가 해당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함.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과 서울특별시 해석 및 의견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초소형 승용 [] 지역거점사업 참여
초소형 화물 []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별첨. 사업계획서

서울특별시의 지역거점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직인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상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업 종	
주 소		연 락 처	
회 사 소 개			
사 업 장 사 진			

☐ 사업내용



전기(이륜포함)·수소 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준수 동의서

파는사람 (현재소유자)	성 명 (법 인 명)		사는사람 (등록예정자)	성 명 (법 인 명)	
차 종	☐ 승용(택시포함), ☐ 화물, ☐ 승합, ☐ 이륜, ☐ 수소차				
차량번호					
의 무 운 행 기 간 준 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타 지자체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전기화물차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2만키로 미만 운영 후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액(국비+시비)의 30% 이상 반납해야 합니다. -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는 매수자도 판매 시에는 반드시 <u>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u>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파는사람) 매 수 자 : (인) (사는사람)					
제출서류	전기화물차 운행거리 증빙자료(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판매시)				

전기화물차 운행거리 증빙자료

판매 차량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명		운행거리	
	전면사진(번호판)		계기판사진	

본인은 전기화물차 판매승인을 위한 운행거리 증빙자료가 실제 운행거리와 다를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에 대해 이해·동의합니다.

년 월 일

매도자성명 : (인)

전기자동차 말소 (☐ 폐차 ☐ 수출) 승인 요청서

소유주	성명 (법인명)		연락처	
	주소			
차량정보				
차명		최초등록일		
차량번호		차대번호		
말소사유		말소(예정)일		
말소시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전기자동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2년, 수출 8년)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사고로 인한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 등				

☞ 서울특별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greencar@seoul.go.kr(팩스 접수 불가)

2025년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할인 구매 확인서

구매자 (신청자)	성명 (법인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판매자 (제작사)	제작사명 (판매사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구매 내역	모델명 (누리집 모델명)	구매대수	할인금액	
			만원	
			만원	
서울특별시 2025년 전기자동차 하반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지역할인제 대상 전 기자동차를 상기와 같은 금액으로 지역할인을 받고 구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구매자(신청자) (서명 또는 인) 판매자(제작사)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025년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 탑재 약속서

판매자 (제작사)	제작사명 (판매사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배터리 관리시스템 알림기능 탑재 내역	모델명 (누리집 모델명)		알림 서비스 무상 제공 기간	
서울특별시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차종에 대해 배터리 관리시스템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4년 이상 무상제공함을 확인하며, 거짓으로 작성 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보조금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판매자(제작·수입사)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